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5. 18 선고 2020가단1444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5. 11.

판 결 선 고 2021. 5. 18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21,800,043원 및 그중 11,622,385원에 대하여 2020. 7. 28.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. 11. 5.자 증여계약은 28,260,4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28,260,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김행순

별지